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격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p> <p>*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 기준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p> <p>-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p> <p>-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p> <p>-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p> <p>-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p> <p>* 부동산 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p> <p>*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소형 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 만 해당하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음)</p> <p>*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음</p> <p>-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1호(2020.09.29))에 따른</p>
당첨자 선정방법	<p>-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p> <p>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p> <p>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p> <p>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ul>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7,450,721원	7,200,810원~8,640,971원	7,326,073원~8,791,286원	7,779,826원~9,335,790원	8,233,579원~9,880,294원	8,687,332원~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8,692,508원	7,200,810원~10,081,133원	7,326,073원~10,256,501원	7,779,826원~10,891,755원	8,233,579원~11,527,009원	8,687,332원~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9,934,294원	8,640,972원~11,521,294원	8,791,287원~11,721,715원	9,335,791원~12,447,720원	9,880,295원~13,173,725원	10,424,798원~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p>-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 ~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p> <p>-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p> <p>-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p>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p>건축물</p> <p>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3">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지자체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지자체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지자체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 (표준지·개발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인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당첨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발급기준	해당서류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당첨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당첨자	주민등록표 등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당첨자	주민등록표 초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당첨자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당첨자	출입국사실증명원	"출생일-2021년 현재" 내역 / 인터넷 '정부24'(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특별공급 기관추천 당첨자는 제외																																									
	○	당첨자 및 직계비속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여부 확인 및 무주택 확인 등 (상세로 발급) ※직계비속의 경우 만18세 이상자에 한함																																									
	○	당첨자 및 세대원	무주택 소명자료	무주택 및 무주택간주(소형자가주택, 농어가주택 등)를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택공시가격경정원 무허가건축확인서등																																									
	○	[분리세대]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분리세대]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에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재혼]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전혼 자녀가 당첨자의 주민등록표상에서 당첨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세'로 발급)																																									
	○	당첨자	해외근무 증빙서류	증빙관련 서류 (꺼진 및 출장 명세서,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차 발급내역 등)																																									
	○	당첨자	복무확인서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포함)																																									
	○	당첨자 및 성인세대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당첨자 및 성인세대원	소득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소득증빙서류 참조]																																									
대리인신청서	○	당첨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p>※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p> <p>※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상세표지" 및 "전체공개"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전입사항/주소변동 내역/세대원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등)</p> <p>※ 제출서류는 당첨자격 검사 과정에서 아래 명시된 서류 외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소득입증 제출서류</th> <th>발급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근로자</td> <td>일반근로자</td> <td>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td> <td>해당직장 세무서</td> </tr> <tr> <td>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td> <td>재직증명서 - 금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td> <td>해당직장</td> </tr> <tr> <td>전년도 전직자</td> <td>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td> <td>해당직장</td> </tr> <tr> <td>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건강보험증상 직장 가입자 해당)</td> <td>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td> <td>해당직장</td> </tr> <tr> <td rowspan="4">자영업자</td> <td>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td> <td>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td> <td>세무서</td> </tr> <tr> <td>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자</td> <td>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td> <td>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td> </tr> <tr> <td>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자</td> <td>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td> <td>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td> </tr> <tr> <td>법인사업자</td> <td>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td> <td>세무서 등기소</td> </tr> <tr> <td>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td> <td>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직속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td> <td>세무서 해당직장</td> </tr> <tr> <td>국민 기초생활 수급자</td> <td>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td> <td>주민센터</td> </tr> <tr> <td>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td> <td>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td> <td>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td> </tr> <tr> <td>무직자</td> <td>비사업자 확인각서(주택전세권 비치) 전년도 1월1일부터 모집공고 전까지 업무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td> <td>접수사무</td> </tr> </tbody> </table>					구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 - 금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건강보험증상 직장 가입자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직속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각서(주택전세권 비치) 전년도 1월1일부터 모집공고 전까지 업무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구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 - 금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건강보험증상 직장 가입자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직속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각서(주택전세권 비치) 전년도 1월1일부터 모집공고 전까지 업무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접수사무																																											

※ 직인날인이 없거나 사본,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